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52609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윤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1. 19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19.

1. 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9. 1. 31.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